##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우재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70

발의연월일: 2024. 10. 30.

발 의 자: 우재준 • 이성권 • 임종득

조지연・김선교・강대식

이상휘 · 구자근 · 주호영

김장겸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,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조정하는 등의 관행이 구직급 여 반복수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및 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,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 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려는 것임.

한편, 사업장의 귀책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이와 같이 개정안은 노동시장에 장기 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건전한 구직수급 관행을 만들고, 고용보험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 고자 하는 것임(안 제13조의2).

법률 제 호

##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조의2(실업급여 보험료의 특례) ①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제13조제4항(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 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부담하여 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 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 위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다.
  - 1.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사람으로서 「고용보험법」 제43조제2항 (같은 법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수급자격자"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비율
  - 2. 해당 사업에 대하여 부과된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수급자격

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

- ②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.
- 1. 일용근로자
- 2.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3.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
- 4.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5.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 자
- 6. 질병·육아, 임신·출산·육아로 이직한 사람
- 7. 이직사유 또는 노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실업급여 보험료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3조의2(실업급여 보험료의 특례)
	①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
	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
	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
	일 이전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
	비율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
	업주가 제13조제4항(제48조의2
	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
	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
	함한다)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
	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
	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
	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
	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
	40 범위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
	<u>다.</u>
	1.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사람
	으로서 「고용보험법」 제43
	조제2항(같은 법 제77조의5제
	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
	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
	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
	사람(이하 이 조에서 "수급자

- 격자"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비율
- 2. 해당 사업에 대하여 부과된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수 급자격자에게 지급된 구직급 여 금액의 비율
- ②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정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대상 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 다.
- 1. 일용근로자
- 2.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제 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3.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제2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 술인
- 4.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6제 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

- 5.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6제

   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

   무제공자
- 6. 질병·육아, 임신·출산·육 아로 이직한 사람
- 7. 이직사유 또는 노무 형태 등을

  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

   는 사람